

대구광역시건축사회 건축공사 감리업무 운영세칙

제정 2017. 9. 12.

개정 2018. 7. 11.

개정 2019. 10. 7.

개정 2020. 3. 10.

제1 () 이 세칙은 “ (” “ ”) 공사감리위원회”(“ ”) (“ ”) 이서 위임된 사항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세칙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 () ① 운영규정 제3 2 ㅅ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공사감리업무 예외 적용 건축물로 한다.

1. 운영지침으로 정하는 건축물
- ② 회장은 제1 .

제3 () 회장은 별지 제1 ㅅ 서식에 따라 공사감리자 등록명부를 작성 . 이치하여야 한다.

제4 () ① 운영규정 제6 2 3 ㅅ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 ㅅ .

② 공사감리자 지정방법은 공사감리자 구성원 중에서 1 (ㅅ계자 포함) .

③ ㅅ장은 제2 3 ㅅ 서식에 의거 지정된 공사감리자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4 .

④ ㅅ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연면적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 () ① 공사감리자가 운영규정 제7 ㅅ에 의거 공사감리자 지정제외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입원, , ㅅ육 등

② ㅅ1 5 ㅅ 서식에 따라 지정 제외신청 사유와 기간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 () ① 운영규정 제9 조에 의거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계약서에 따라 건축공사 감리계약(“ ”) , 계약서 사본을 협회에 제출한다.

② 운영규정 제9 조 2항에 의거 감리의 방법 및 절차에 있어 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의 설계자에게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고, 의도하는 등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,

제7 () ① 운영회비는 150 /m²) , 한액은 건당 500 . <개정 2019.10.7., 2020.3.10.>

② 운영규정 제11 조 2항에서 정한 운영회비를 공사감리 계약 후 5 (“ ”) 내 납부하여야 한다. ,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.

③ 운영규정 제11 조 2항에 따라 회장은 회원이 납부한 운영회비에 대하여 운영회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, 의원은 허가권자가 협회에 사용승인 업무대행자 선임의 의뢰할 경우 운영회비납부확인서를 협회로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운영규정 제11 조 3항에 따라 회장은 협회운영상 필요한 경우 운영회비 사용범위, 방법, 차 등을 이사회 심의 결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8 () ① 의원에 대한 징계구분 및 징계절차는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.

② 공사감리자로 구성된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감리자 지정을 제외할 수 있다.

1. 2 6개월을 초과 하는 회원
2. , , 1 3개월 이상 있는 회원

③ 제2항의 해당 회원에 대한 공사감리자 지정 제한 기간 등은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한다. 13 조 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토록 할 수 있다.

제9 () ①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 조 서식에 신청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회장은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 .

③ 의원장은 제2 5일 이내에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의원장은 분쟁조정 신청인 및 피신청인을 위원회에 출석토록 요청할 수 있다.

제10 () ① 감리대가는 건축주와 공사감리자간의 자율적인 계약에 따르되 “ ” .

② 공사감리자가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감리대가에 대한 정산은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다.

제11 () ① 이 세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정한다.

② 회장은 제1

제12 () 이 운영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운영지침에 따른다.

() <2016.9.12. >

제1 () 이 세칙은 2017. 9. 25.

() <2018.7.11. >

제1 () 이 세칙은 2017. 9. 25.

() <2019.10.7. >

제1 () 이 세칙은 2019. 11. 1.

() <2020.3.10. >

제1 () 이 세칙은 2020. 3. 16.

건축공사 감리자 선임신청서

건축물	허가일자	20 . .	허가번호	제 호
	위 치		대지면적	m ²
	건축규모	지상 층, 지하 층	연 면 적	m ²
	용 도		구 조	
건축주	성 명		전화번호	
	주 소			
설계자	사무소명		건축사명	
	업무신고 번 호		자격번호	
	소 재 지		전화번호	
공사기간	착공예정일	20 . .	사용승인 예 정 일	20 . .

대구광역시건축사회 건축공사 감리업무 운영규정 제6 4 1 에 따라
위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공사 감리자 선임을 신청합니다.

1. () 1 님
2. () 1 님
3. 「 」 15 2 1 님

20 ! 월 일

신청인 : ()

대구광역시 건축사회 회장 귀하

건축공사 감리자 지정통보서

20

건축물	허가일자	20	허가번호	제 호
	위 치		대지면적	m ²
	건축규모	지상 층, 지하 층	연 면 적	m ²
	용 도		구 조	
건축주	성 명		전화번호	
	주 소			
설계자	사무소명		건축사명	
	업무신고 번호		자격번호	
	소 재 지		전화번호	
공 사 감리자	사무소명		건축사명	
	업무신고 번호		자격번호	
	소 재 지		전화번호	
공사계획	착공예정일	20	사용승인 예 정 일	20

대구광역시건축사회 건축공사 감리업무 6 , 4 2 나 및
제3 .

20 ! 월 일

대구광역시 건축사회 회장

건축공사 감리자 지정 제외 요청서

감리자	사무소명		건축사명	
	업무신고 번호		자격번호	
	소재지		전화번호	
기간	201 . . . ~ 201 . . .			
사유				
<p>대구광역시건축사회 건축공사 감리업무 7 5 에 따라 건축공사 감리자 지정 제외를 요청 합니다.</p> <p>20 1 월 일</p> <p>신청인 : ()</p> <p>대구광역시 건축사회 회장 귀하</p>				

분쟁조정신청서

건축물	허가일자	20 . . .	허가번호	제 호
	위 치		대지면적	m ²
	건축규모	지상 층, 하 층	연 면 적	m ²
건축주	성 명		전화번호	
	주 소			
설계자	사무소명		건축사명	
	소 재 지		전화번호	
공 사 감리자	사무소명		건축사명	
	소 재 지		전화번호	
시공자	성 명		전화번호	
	주 소			
분쟁사유				
<p>위와 같은 분쟁사유로 인하여 대구광역시건축사회 건축공사 감리업무 15 조 및 운영세칙 제9 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 !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청인 성명 (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font-weight: bold; font-size: 1.2em;">대구광역시 건축사회 회장 귀하</p>				